

전라남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과태료 부과 업무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는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다.

2. 과태료 부과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도로

관리청은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자목에 따르면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회 위반은 과태료 50만원, 2회 위반은 과태료 70만원, 3회 위반은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최근 1년간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1회 위반은 과태료 50만원, 2회 위반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 등 2명이 축하중 2톤 미만 초과를 위반하여 최근 1년간 2회씩 적발되었는데도 [표 1] “과태료 부과 부적정 현황”과 같이 2회 위반에 따른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1회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으로 각각 부과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과태료 부과 부적정 명세

(단위 : 원)

위반자	위반일자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부적정 부과 내용 (적법한 과태료 부과)
○○○ (●●●)	2020.11.24.(1회)	3축하중 1.14톤 초과	500,000	
	2021.05.12.(2회)	3축하중 1.03톤 초과	500,000	1회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700,000)
○○○ (●●●)	2020.10.20.(1회)	3축하중 1.32톤 초과	500,000	
	2021.04.06.(2회)	2축하중 1.06톤 초과	500,000	1회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700,000)

자료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3.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및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5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20일 이내인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고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는 [별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고지 및 압류 조치 부적정 명세’와 같이 37건의 운행제한 위반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는데도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미고지하고 또한 체

납자의 재산 압류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이행과 지방세수입 확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① 기한 내에 과태료를 미납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고지하고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축하중 등 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시 1회 위반, 2회 위반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등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 동부지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한다)는 2018. 11월부터 2021. 9월까지 [표] “5억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33,446 백만원을 투입하여 29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5억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계		도로보수과		동부지소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29	33,446	23	24,393	6	9,053

자료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 따르면 초급 품질관리 대

상 건설공사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모 20m² 이상의 시험실과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교육(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품질시험 자격을 갖춘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이 660 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승인 통보하고, 규모 20m² 이상의 시험실과 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 동부지소)는 [별표 1]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명세”와 같이 10개 사업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지 않았고 2021. 10. 1.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부지소는 [별표 2] “시험실 미설치 명세”와 같이 2개 사업장의 현장에 시험실(시험, 검사장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2021. 10. 1.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로보수과 등 2개 부서는 [별표 3]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 명세”와 같이 2개 사업장의 현장에서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였는데도 2021. 10. 1.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및 시험실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장에 대한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국도2호선 ○○ ○○ ○○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등 10개 사업지구, 시험실을

미설치한 “지방도○○호선 ○○(○○)○○ 수해복구공사”등 2개 사업지구, 품질 관리자 교육을 미이수한 “국도○○호선 ○○ ○○ ○○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2개 지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계획 승인, 시험실 설치, 품질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시스템 등록 및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 동부지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한다)는 2018. 10월부터 2021. 9월까지 “2018 지방도 ○○호선 ○○ ○○지구 등 3개소 도로시설물(옹벽) 정밀점검용역” 등 104건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¹⁾”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지역계획과)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재 요청” 공문을 접수받았고 같은 내용을 2015년부터 총 4회²⁾에 걸쳐 통보하였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는 발주기관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위 시스템에 등재된 내용을 활용하여 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도 등의 평가업무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준공한 경우에 10일 이내 그 사실을 건

1)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14. 5. 23. 이후 용역실적은 이 시스템에 입력된 결과만 인정토록 하고 있음

2) 지역계획과-5984(2015. 4. 20.), 지역계획과-5301(2017. 3. 13.), 지역계획과-6548(2017. 3. 29.), 지역계획과-4396(2018. 3. 7.)

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과 업무중복도 평가업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1. 10. 1. 감사일 현재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된 전산화 등록 여부를 살펴본 결과 [별표]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 미등록 명세”와 같이 “2018 지방도 ○○○○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준공일(2018. 12. 26.)로부터 1,00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86건에 대하여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그 결과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용역결과가 적기에 등재되지 못해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활용하지 못하여 신규로 발주되는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적격자 선정 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2018 지방도 ○○○○ 설치공사 실시계획용역(○○)”등 86개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 등록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방도 ○○호선 ○○(○○○○)지구 수해복구공사 등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 동부지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한다)는 지방도¹⁾ 및 위
임국도²⁾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2018~2021년)”
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2018~2021년)

(단위 : 건, 억원)

연도	계	도로구조개선	도로안전시설	도로유지보수	재해복구	교량유지보수
합계	1,118 / 2,882	132 / 756	235 / 643	324 / 402	114 / 316	313 / 765
2018년	218 / 649	39 / 211	25 / 155	69 / 89	6 / 9	79 / 185
2019년	312 / 742	28 / 166	85 / 191	101 / 124	13 / 15	85 / 246
2020년	328 / 733	21 / 164	64 / 134	97 / 100	55 / 137	91 / 198
2021년	260 / 758	44 / 215	61 / 163	57 / 89	40 / 155	58 / 136

자료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
장 제3절 2. 다. 2). 다). (3)항에 따르면 공사에 특허나 신기술 등이 포함되어있

1) 지방도 현황 : 45개 노선 2,298km, 교량 464개교, 터널 14개소

2) 위임국도 현황 : 9개 노선 600km, 교량 108개교, 터널 7개소

는 경우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표 2] “특허권자 하도급 체결 후 특허사용료 반영된 사업 현황”과 같이 공사 도급자와 특허 기술 보유자간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표 2] 특허권자 하도급 체결 후 특허사용료 반영된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특허권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계약일	특허사용료	비고
계					23,531	
지방도 〇〇〇〇 〇〇〇지구 수해복구공사	〇〇〇	●●●	〇〇〇	2021. 6. 1.	17,140	
지방도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보수공사	〇〇〇	●●●	〇〇〇	2021. 9. 28.	1,609	
지방도 〇〇〇〇 〇〇〇〇 등 2개소 보수공사	〇〇〇	●●●	〇〇〇	2021. 9. 28.	2,262	
지방도 〇〇〇〇 〇〇〇〇 등 2개소 보수공사	〇〇〇	●●●	〇〇〇	2021. 9. 28.	2,520	

자료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사업에 반영된 특허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공사에 참여했으므로 설계 반영된 특허사용료에 대하여 설계변경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 동부지소)는 2021. 10. 1. 감사일 현재

특허사용료에 대하여 별도로 실정보고 승인이나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23,531천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및 감액을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과다 계상된 23,531,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절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준공된 도로보수공사 등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도로보수과, 동부지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는 2018. 10월부터 2021. 9월까지 “국도 ○○호선 ○○ ○○○○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203건 27,871,178천 원의 도로보수 및 시설 공사를 준공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관리사업소는 매년 상·하반기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 과장 책임하에 각 사업장별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하자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했으며, 특히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계약의 경우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는 등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 동부지소)는 관리과로부터 정기하자검사 실시계획 및 최종 하자검사 실시 공문을 통보받고도 [별표] “하자검사 대상 공사의 하자검사 미실시 명세”와 같이 2018. 10월부터 2021. 9월까지 준공된 공사 203건에 대해서 공사 현장 점검 및 민원 처리 등의 이유로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과에 하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특히 [별표] “하자검사 대상 공사의 하자검사 미실시 명세”의 준공된 공사 중 국도 ○○호선 ○○ ○○○○ 위험도로 개선사업(2차분) 등 149건은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했으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도록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도로관리사업소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공사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10월부터 2021. 10. 1.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의 보수 공사 관련 민원¹⁾이 매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1) 총 131건('18년-13건, '19년-37건, '20년-50건, '21년-31건)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준공사업에 대한 하자검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현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사 현장 54개소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하자검사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